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2가단51336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2020. 12. 31.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8186호로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75,531,50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추완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의 아들이다.

○ 주식회사 F(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의 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0. 12. 31.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2020년도 현금변제분 825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라 한다)하여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년경 이 사건 송금행위의

존재 및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권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원고가 소외 G을 상대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액을 피고 주장에 따라 감축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소권남용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로 하여금 825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5. 소외 회사에 채권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로 2020. 7.경 소외 회사로부터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중 825만 원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송금을 받은 것이며, 당시 소외 회사는 무자력 상태도 아니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송금사실 외에 위 송금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는 2013. 7. 15.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이 사건 송금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일응 이에 부합하는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20. 12. 31.자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